

##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檢 討 報 告 書 》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2005.12.8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당초예산액	1차 추경예산액	간주처리	
<b>총 계</b>	<b>261,148,905</b>	<b>233,335,672</b>	<b>7,364,101</b>	<b>20,449,132</b>	
일반회계	219,786,128	194,000,000	6,753,396	19,032,732	
특별회계	계	41,362,777	39,335,672	610,705	1,416,400
	의료급여	136,311	61,311	-	75,000
	주민소득	1,466,511	1,466,511	-	-
	주차장	39,759,955	37,807,850	610,705	1,341,400

#### □ 2005년제2회 추경예산안 내용

- **자치행정과 소관** 새주소개선사업추진비 - 59,000천원
- **문화체육과 소관** 대림정보문화도서관건립비 - 789,350천원
- **문화체육과 소관** 양평정보문화도서관건립비 - 260,636천원
- **문화체육과 소관** 구민회관리모델링사업비 - 1,800,000천원
- **지역경제과 소관** 기술혁신활성화사업비 - 64,000천원
- **도시관리과 소관** 신길뉴타운개발계획수립용역비 - 668,000천원을

2006년도로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 검토의견

- 명시이월 예산사업의 내용을 살펴본바, 특별교부금 또는 보조금 사업으로 보조 및 교부결정이 2005.11월과 12월에 이루어져 2005년 중 사업의 시행이 불가하거나,
- 정보문화도서관 건립 등 수년에 걸친 사업의 사업비로 보조금의 집행 잔액 이므로, 2006년에 이월하여 사용함으로써 우리구 재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제출된 추경예산안과 같이 명시이월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 12. 12

보고자 : 김 찬 재